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숭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345

발의연월일: 2024. 12. 10.

발 의 자:백승아·김준혁·황정아

이기헌 • 이수진 • 한창민

박홍배 · 김문수 · 김동아

최기상 · 김남근 · 박해철

오세희 • 이광희 • 조계원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舊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주어진 업무는 국가의 지원 하에 시·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임. 그리고 이미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전문 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직접 설치하여 교권 보 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 간정합성을 확보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하에 계속해서 교육활동보호 업무를 직접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

법률 제 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지정"을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청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운 영"을 "설치·운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u>지정</u>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	<u>· 운영</u> 등) ①
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	
을 지원하기 <u>위하여</u> 전문인력	위하여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
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	<u>• 운영하거나</u>
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	
할 수 있다.	
	<u>.</u>
② <u>관할청은</u> 제1항에 따른 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육활동보호센터의 <u>운영</u> 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 <u>설치·운영</u>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